

관세전쟁 2라운드: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드러낸 새로운 안개

EY한영 산업연구원
February 2026
#26-069

Introduction

지난 1년간 미국 트럼프 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협약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이슈였다. 국가별 관세율 조정, 품목별 관세율 차별화, 복잡한 예외 규정 등에 대한 협상 과정으로 글로벌 교역 환경의 변동성이 증가했던 한 해였다. 이러한 잡음 속에 진행되던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지난 2월 20일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맞으며 사실상 종결 국면에 들어섰다.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는 즉시 상실되었고, 이어 2월 24일 미국정부가 보편관세를 10%로 일괄 조정하며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기존 협약으로 발생한 관세 환급 범위 및 절차, 품목별 예외·감면 규정,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의 적용 방식, 그리고 WTO 최혜국대우(MFN¹) 원칙 및 FTA 특혜관세 체계 간 정합성 등은 여전히 준비가 필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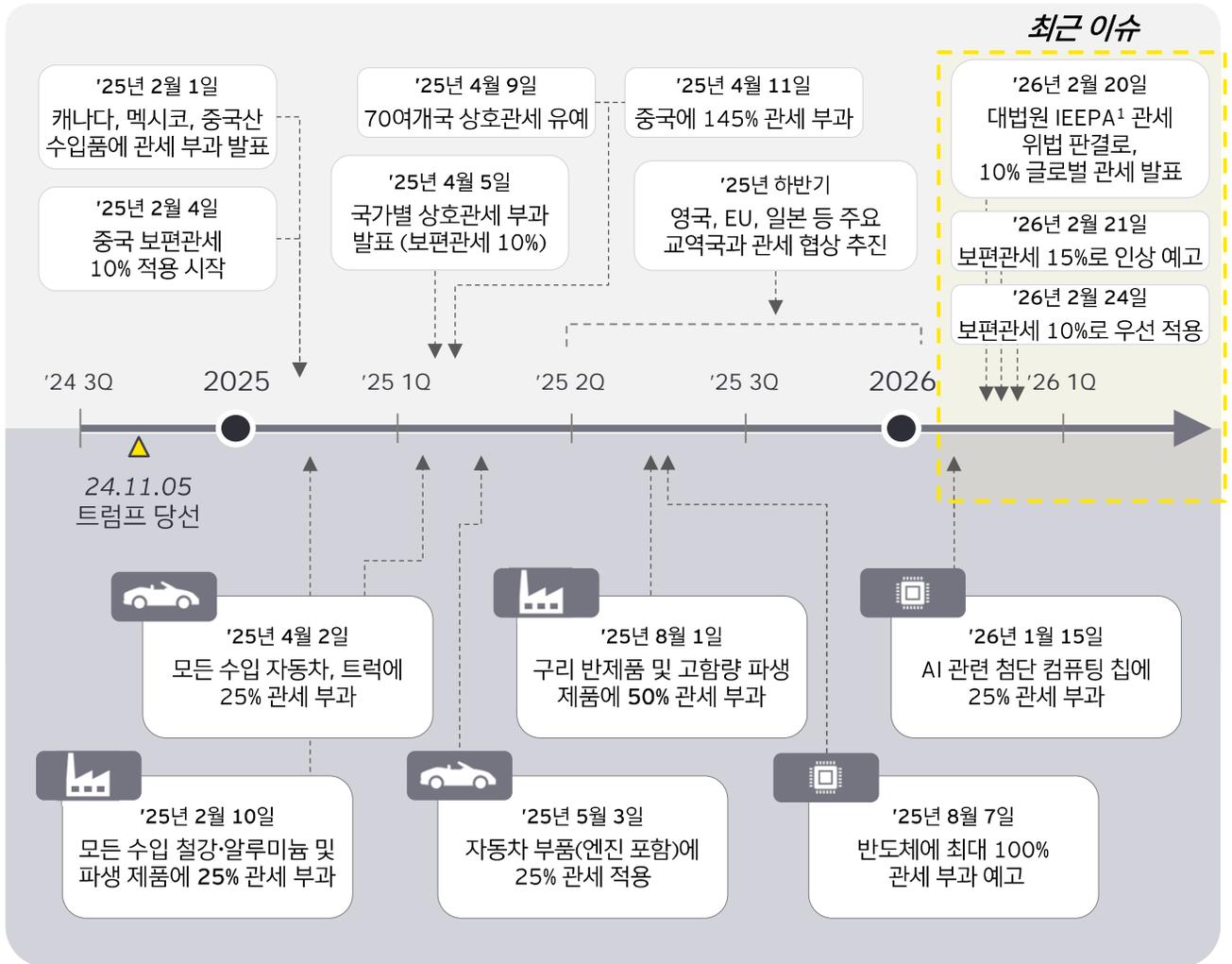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기업의 투자전략·공급망 운영·재무 구조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대미 투자 계획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10%의 보편관세가 적용되더라도, 향후 발표될 고시 및 행정지침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시점에 따라 실제 관세 부담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최근 관세 환경의 변화 흐름 및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미 행정부의 후속 대응 방안을 전망한다. 이를 통해 변동성이 커진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관세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강화 방향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Most-Favored-Nation Treatment

1. 트럼프 관세 정책 주요 여정

트럼프 2기 Key Event Timeline



1.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Source: The White House, Atlantic Council, EY Analysis

1. 트럼프 관세 정책 주요 여정

트럼프 관세 정책 여정 Story Timeline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정책은 기존 미국 무역 정책의 틀을 벗어난 전례 없는 고강도 광범위 관세 실험으로 평가된다.

2025년 초 트럼프 대통령은 IEPPA(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전세계 모든 국가에 최소 1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무역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IEPPA는 그간 미국 무역정책 역사에서 경제 제재 부과와 근거리 활용되어 왔으나,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는 없었다.

또한 글로벌 10% 보편관세와 별도로, 특정 국가들에 대해 14-25% 이상의 고율 상호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산업 및 품목별로 차등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기존 자유무역의 틀을 흔드는 조치로, 글로벌 기업과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출범과 함께, 한 해 동안 여러 국가와 관세 관련 협의와 공동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중국과는 반복적인 임시 관세 부과 및 유예 조치를 반복하며 정책의 강도와 시점을 조절했다.

위법성 논란의 본격화 및 판결

2025년 말부터 미국 내 중소기업·수입업체들은 트럼프의 관세 결정이 IEPPA가 허용하지 않은 일방적 관세 부과라며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IEPPA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관세는 헌법상 의회 권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여러 비상사태 명분이 IEPPA가 요구하는 위협 기준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IEPPA에 기반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관세 환급의 가능성과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의미

2026년 2월 20일 미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로 시행되던 글로벌 상호관세 제도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제도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판결 이전에 합의·공표된 대미 투자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판결의 소급 적용 여부와 새로 도입된 보편관세(10%)의 구체적 적용 방식 등 핵심 사안들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1) 상호관세 조치의 효력 중단 및 후속 절차

대법원 판결로 기존 글로벌 상호관세 조치의 효력은 즉시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법적 근거에 기반한 추가 관세 부과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 권한의 헌법상 귀속 주체가 의회임이 재확인되었고, 행정부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판결의 적용 범위(전면 소급 적용 여부 또는 장래호 적용 여부)는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재무부 및 USTR¹는 판결 이행을 위한 내부 지침 및 시행 기준을 마련 중이며, 관련 행정지침이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2) 기존 대미 투자 계획의 이행 전망

위법 판결과는 별도로, 기존에 합의·공표된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철회 또는 중단 발표는 현재(2월 24일)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 내 전략산업 투자(2,000억 원) 및 조선업 협력 투자(1,500억 원)는 기존에 발표된 범위 내에서 추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판결 직후인 점을 고려할 때, 착공 일정과 자금 집행 등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한 영향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현재까지 일정 조정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으나, 판결의 적용 범위와 후속 행정지침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일정이나 집행 방식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현 시점에서는 '대미 투자 계획의 기본 방향 유지'가 우세한 시나리오로 판단되며, 중대한 축소나 전면 재검토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는다.

3) 보편관세 10% 조정 및 적용 범위

미 행정부는 2월 24일 보편관세를 10%로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조치로, 원칙적으로 쉐 수입품에 일괄 적용되는 기본 관세를 의미한다. 다만 품목별 예외·감면 기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의 적용과 WTO 최혜국대우(MFN)원칙 및 FTA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 등 세부 적용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명목 관세율 10% 부과 자체는 명확해 보이지만, 통관 단계에서의 실질 관세 부담 수준과 예외 적용 범위는 향후 발표될 행정지침과 입법 동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가격 정책 및 원가 산정에 보수적 가정을 적용하고, 관세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계약 조정 조항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3. 향후 미국 행정부의 대응 예상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최종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적 '관세 전쟁'은 법적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행정부 핵심 정책의 한 축인 관세 정책의 종식이 아니라, 정책 수단의 전환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보호무역 기조와 세수 확보, 그리고 정치적 동원 효과를 동시에 노려온 트럼프식 통상 전략을 고려 시, 기존 관세 협약체계를 단순 철회하기보다는 법적 근거를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재가동될 개연성이 크다.

즉, 위법 판단을 받은 기존 상호관세 체계는 폐기되더라도, 새로운 법적 카드를 활용해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대응은 단기적 조치와 중장기적 구조 재편으로 구분하여 예상할 수 있다.

단기적 대응 - 무역법 122조 기반 '글로벌 관세' 도입

단기적으로 가장 유력한 선택지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122조를 활용한 전세계 대상 '글로벌 관세' 도입이다.

Trade Act of 1974 제122조는 국제수지 위기나 달러 방어 필요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수입 제한 또는 관세 부과 조치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의회 사전 승인 없이 단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에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24일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10% 수준의 한시적 보편관세를 부과를 발표했다. 이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 '전면적·비차별적' 조치라는 점에서 WTO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단기간 내 세수 확보와 협상 압박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카드다.

다만, 150일 이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국 내 산업계와 소비자 단체의 반발,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할 때 연장 승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따라서 이는 정치적 메시지와 단기 세수 확보를 위한 한시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중장기적 대응 - 무역법 301조·232조 기반 관세 체계를 통한 통상 압박

단기 글로벌 관세 부과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구조적으로 특정 국가 및 산업을 겨냥하여 정밀 타격 방식으로 관세 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법안 모두 초기 발동 절차가 까다롭고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으나, 관세율 상한선이 없고 일단 발동된 뒤에는 세율 조정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트럼프식 '협상 레버리지'로서의 위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3. 향후 미국 행정부의 대응 예상

(1) 무역법 301조 기반 '보복관세' 도입

USTRI가 주도하는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대통령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중국에 대해 활용된 전례가 있으며, 해당 조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향후,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도 산업보조금, 디지털세, 기술이전 문제 등을 명분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 한국 역시 반도체·배터리·철강·자동차 보조금 체계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01조는 사전 조사 절차를 수반하므로 법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정 품목에 집중할 수 있어 정치적 활용도가 크다.

다만, 301조 조치 발동을 위해서는 조사 개시 공지와 최소 30일의 의견 수렴, 대상국과의 최소 60일 협의,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또한, 행정부가 일반적으로 기간을 단축할 경우 행정절차법(APA) 위반 소송 리스크도 존재한다.

(2)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 '국가안보 관세' 도입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는 국가안보 위협 판단 시 산업별 품목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해 미 상무부는 조사 개시 270일 내에 보고해야 하며 이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가장 큰 특징은 관세율에 상한이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이 조항을 근거로 다양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왔고, 2기 들어서도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향후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전략광물 등 공급망 핵심 산업을 국가안보 사안으로 재정의할 경우, 산업별 관세 강화가 가능하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안보'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설득력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계산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로 중단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관세 조항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관세 세수는 기존 상호관세 계획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관세는 단순 통상정책을 넘어, 세수 확보와 산업정책, 그리고 선거 전략이 결합된 수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복합적 조치를 통해 "미국에 실질적 이익을 환수했다"는 메시지를 강화하며, 202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정치적 성과로 연결하려는 전략적 구상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글로벌 경영환경 영향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에 의거한 글로벌 관세 도입을 즉시 선언하며 관세 징수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고히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 가능한 법안 확보를 통해 신규 관세를 부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글로벌 통상환경은 재차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美 통화정책·달러 지수·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글로벌 경영환경 전반에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1) 美 통화정책

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을 높인 가운데,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도입한 글로벌 관세는 일부 국가 품목에는 인플레이 완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다른 국가 품목에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단기 물가의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Fed의 금리 인하 시점을 지연시키고, 금리의 하방 경직성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된 국면에서 Fed의 정책판단은 관세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 간의 균형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2) 달러 지수

환율은 단순 무역수지보다 양국간의 금리차, 지정학적 프리미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정된다. 과거 무역 갈등 확대 시 달러는 안전자산 선호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을 감안하면,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원화 강세 구간이 전개될 수 있다. 다만 구조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변동성 확대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3) 원자재 가격

[철강재/비철] 자동차 및 철강에 사용되는 철강재/비철의 경우, 보편관세 일괄적용에 따라 미국 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이는 미국 수요의 위축과 글로벌 공급 과잉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제외한 지역의 조달 가격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유가] 글로벌 관세부담의 확대는 교역 둔화 및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으로서 수요 위축으로 인한 유가 하락을 유발한다. 아울러, 시장 전반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투자 및 생산 계획 변화는 유가 변동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5. 국내 기업 시사점

국내 기업의 경쟁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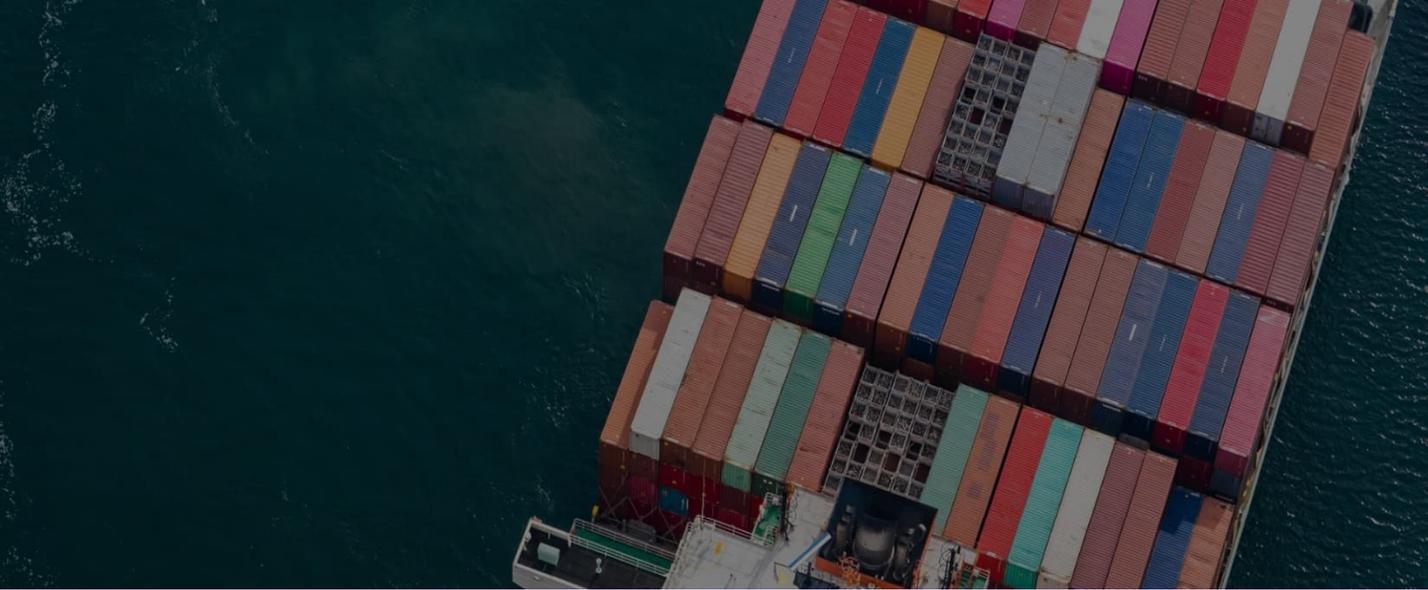
미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대미 시장 환경은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존 국가별 차등이 있었던 관세가 일률화되며, 국가별 관세부담의 특실이 달라지게 되었다.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관세 부담을 통해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한편, 우리 나라를 포함한 몇몇 국가는 관세율이 소폭 하향되거나 변동이 없지만, 관세율이 크게 하락한 국가를 고려 시, 상대적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 변수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국가명	① 기존 상호관세 (-2/19)	② 글로벌 관세 (2/20 발표)	③ 관세율 변화 (②-①)	④ 대미투자 협약 내용 (백악관 팩트시트 기준)
중국	47%	10%	-37%p	▪ 대미 농산물 구매 확대
베트남	46%	10%	-36%p	▪ 약 \$30bn 규모 대미 항공기·농산물 구매
미얀마	44%	10%	-34%p	▪ 공식자료내 기재 無
인도	26%	10%	-16%p	▪ 약 \$500bn 규모 대미 구매
대만	20%	10%	-10%p	▪ 대미 투자·조달 확대 명시 (\$250bn 규모 전망)
한국	15%	10%	-5%p	▪ \$350bn 규모 대미 투자
EU	15%	10%	-5%p	▪ \$600bn 규모 대미 투자
일본	15%	10%	-5%p	▪ \$550bn 규모 대미 투자
영국	10%	10%	0%p	▪ 영국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캐나다	0% ¹	미적용	0%p	▪ 공식자료내 기재 無
멕시코	0% ¹	미적용	0%p	▪ 공식자료내 기재 無

USMCA 기반 관세 적용

1. USMCA 원산지 충족 품목에 대해서는 0%, USMCA 비충족 품목은 35%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및 멕시코의 대미 수출품의 대부분(-90%)이 원산지 충족 품목에 해당



맺음말

지난 미국 상호관세 협정 이후 잠시간 맑았던 통상환경이 또 다시 불확실성의 안개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잠시 소강 상태였던 금과 같은 안전자산 시장이 요동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는 기존 상호관세 협약이 무효화됨에 따라 긴급히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 위법이라는 강력한 악재를 어떠한 방식을 써서라도 해소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수입은 현 트럼프 정부의 국가 부채 상환 등 경제 공약 달성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판단되며, 때문에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행정부 단독으로 각 국에 관세를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여전히 남아 있고, 현 트럼프 정부는 활용 가능한 여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의 대응은 새로운 통상 마찰을 유발하고, 이것은 새로운 지정학 리스크 및 글로벌 거시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미 정부의 예외 조항 활용을 통한 다양한 관세 부과 상황을 상정하여 사전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보편관세 체계로 인한 일시적 변화는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 구도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산업별 면밀한 분석 역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완화 전략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Contact Point

EY한영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장 | 권영대 파트너
young-dae.kwon@kr.ey.com

산업연구원
실무 총괄 | 김광현 상무
kwanghyun.kim@kr.ey.com

산업연구원 | 정현종 이사
hyun-jong.jeong@kr.ey.com

민운기 매니저
woonki.min@kr.ey.com

조아미 시니어
amy.killick@kr.ey.com

김규민 매니저
gyumin.kim@kr.ey.com

남정언 시니어
jungun.nam@kr.ey.com

EY한영

통상 및
관세 전문 | 박동오 파트너
dongo.park@kr.ey.com

정인식 파트너
in-sik.jeong@kr.ey.com

정일영 파트너
ilyoung.chung@kr.ey.com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planet, while building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Y teams help client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develop answers for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EY teams work across a full spectrum of services in assurance, consulting, tax, strategy and transactions. Fueled by sector insights, a globally connected, multidisciplinary network and diverse ecosystem partners, EY teams can provide servic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All in to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26 Ernst & Young Han Young

All Rights Reserved.

APAC No. 05001303
ED None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